의 안 번 호

2383

【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】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2. 3.(월) 김도운 의원 외 4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2. 3.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2. 17.(월)

# 2. 제안설명 **요지**(김도운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다문화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적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, 이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, 다문화 아동·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O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O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(안 제5조)
- O 업무의 위탁(안 제6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O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3조, 제10조

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결혼이민자인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하기 위한 이중언어 교육기회를 지원하여 이들의 언어능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 기회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- O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 거 법 규

####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「국적법」제2조부터 제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 - 나. 「국적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가.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  -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- 3. "아동·청소년"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 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- **제10조(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,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「유아교육법」제7조에 따른 유치 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의 장은 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· 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